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구(舊)통장 해지 업무 관련 안내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목 차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구(舊)통장 연간 해지일정표 ····· **05**

공통사항 ····· **09**

통장별 세부사항

1. 희망키움통장 I ····· **17**
2. 희망키움통장 II ····· **18**
3. 내일키움통장 ····· **20**
4. 청년희망키움통장 ····· **22**
5. 청년저축계좌 ····· **23**

부록: 자산형성지원사업 증빙서류 관련 기준 및 예시 ····· **25**

본 매뉴얼은 해지업무시 자주하는 질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II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구(舊)통장 연간 해지일정표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구(舊)통장 연간 해지일정표

※ 희망키움통장 I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달 만기대상자 발생하므로 상시 해지진행 합니다.

구분	희망키움통장 II	청년저축계좌
1월	〈2020-2(7월)〉 기수 유예기간 종료	
2월		
3월	〈2021-1〉기수 만기대상자 서류제출 및 해지 안내*	〈2021-1〉기수 만기대상자 서류제출 및 해지 안내* 〈2020-2기수(9월)〉 유예기간 종료
4월	〈2021-1〉기수 만기 〈2020-3(10월)〉기수 유예기간 종료	〈2021-1〉기수 만기
5월		
6월	〈2021-2〉기수 만기대상자 서류제출 및 해지 안내 〈2020-4(12월)〉기수 유예기간 종료	〈2021-2〉기수 만기대상자 서류제출 및 해지 안내
7월	〈2021-2〉기수 만기	〈2021-2〉기수 만기
8월		
9월	〈2021-3〉기수 만기대상자 서류제출 및 해지 안내	〈2021-3〉기수 만기대상자 서류제출 및 해지 안내
10월	〈2021-3〉기수 만기 〈2021-1(4월)〉기수 유예기간 종료	〈2021-3〉기수 만기 〈2021-1기수(4월)〉 유예기간 종료
11월	〈2021-4〉기수 만기대상자 서류제출 및 해지 안내	〈2021-4〉기수 만기대상자 서류제출 및 해지 안내
12월	〈2021-4〉기수 만기	〈2021-4〉기수 만기

*만기대상자 안내 시기는 권고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시기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통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생계	O	X	자활근로참여자	O	X
	의료	O	X		X	X
	주거·교육	X	O		X	O
	차상위	X	O		X	O
본인저축		월 5/10만원	월 10만원	월 5/10/20만원	본인 의무저축 없음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월 10만원
정부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시 월 정액 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단 매출액) 1:1 혹은 1:0.5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원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933만원 (최대 3,078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20만원 저축시) 2,268만원(최대 2,34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최대 720만원 포함	1,944만원 (최대 2,588만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최대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 · 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 · 창업등 자활근로 종결 필수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가구단위 통장		자활참여자 본인	청년 가입자 본인	

1. 지원금 적립 절차

지원금 적립시 역할 및 절차

구분(기관)	가입자	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시군구
역할	본인적금통장에 적립금 입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적금 납입 필수 아님	근로소득장려금 및 공제금 생성후 전송 ※희망키움통장II, 청년저축계좌는 적립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 전송됨.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에서 해당 지역 개인별 적립계좌로 근로소득 장려금 입금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입금여부 점검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매분기 매출정산 시 내일키움수익금을 산정하여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에 개별 입금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매월 《자산형성지원사업 2024년 0월 실적현황 송부》 공문을 시·도로 배부, 각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공문을 참고하여 미적립현황을 확인 및 관리
- 희망 I , 희망II, 청년희망, 내일키움, 청년저축은 통장별 예탁금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예탁 및 예산전용시 주의

2. 해지 절차

지급해지 진행시 역할 및 절차

지역자활센터	① 각 통장별 만기대상자 파악 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 유선, 문자 등 해지 서류 및 절차 안내 ② 교육이수가 지급요건에 포함된 경우, 만기이전에 교육 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가입자 관리 필요 * 만기 후 유예기간 중인 가입자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반드시 자료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가입자 관리
가입자	해지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지역자활센터	해지서류 및 증빙서류 검토후 시군구에 보고
시군구	① 각 통장별 해지사유 확인 후 지급해지 대상자 확정 ② 행복e음 통해 지급/환수해지(해지사유), 최종지원금액/환수금액 등록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해지구분 및 금액 확인 후 처리여부를 Y로 변경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지신청자의 지원금 적립계좌 해지

- 환수해지시 가입자의 증빙서류 제출 외 위 절차와 동일
-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지자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 단, 해지 전 당사자 및 가구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는 지급해지요건(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등)에 대해서 가입자가 지급요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만기일 6개월 이전 안내 필요
- 해지 신청 후 해지 완료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안내하여 관련 민원을 방지

3. 사용용도증빙 : <부록> 자산형성지원사업 증빙서류 관련 기준 및 예시

①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한 증빙 필수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준 동일한 보장가구 내 가구원의 사용 내역 증빙 가능
③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해 인정
④ 원칙적으로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해당
☞ (증빙서류 인정 기간) 본인적금통장 개설일부터 해지신청서 제출일까지

4. 특이사항

1) 전출입 처리

① 해지대상자에 대한 전출입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복e음을 통한 전출입 내역 확인 필요
② 전출입 처리시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사례관리기관 변경하여 해당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지급해지 진행시 역할 및 절차

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희망키움통장 I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청년)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청년이 속한 지자체)
내일키움통장	신청자(자활참여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
청년저축계좌	신청자(청년)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2) 개명시 해지절차

① 개명 사실 확인 후 가입자에게 개명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초본 제출 안내
② 가입자가 주민등록초본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행복e음 –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변동관리 – 성명 변경–변동 정보 전송, 정보 전송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명한 이름이 반영되므로 개명 후 이름으로 해지 진행
③ 해지 완료 문자가 전송되면, 가입자는 주민등록초본·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 (은행에서 예금주 변경 진행)

5. 기타 : 가입자 안내사항

1) 지원금 적립내역 확인 방법

① 은행창구 및 ATM기에서 본인적금 납입통장을 정리하면 지원금 적립 문구가 표시됨

하나은행

과 목(상품종류)	계 좌 번 호	신 규 일	만 기 일
내일·희망키움통장	000-000000-00000	20**-00-00	20**-00-00
기간 : 36개월			

날 짜	내 용	내 용	맡기신 금액	잔 액
20**,00,00	자동이체	대체	100,000	100,000
*지원금(장려금 또는 수익금)		_____ 원 입금되었습니다		
(누적금액:		_____ 원)		

② 하나은행 인터넷·스마트폰(어플)뱅킹을 통한 적금통장 거래내역 적요란을 확인할 시 지원금이 표시됨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거래일시	구분	적요	출금액	입금액	잔액	거래점
2018.10.12 15:33:12	대체	구분	*장려금 100,000원 입금되었습니다.		400,000	영업부

스마트폰 뱅킹 (어플)

거래내역조회 전체메뉴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과거거래내역

대체

* 장려금 100,000원 입금되었습니다. 잔액 300,000원

2) 해지시 가입자 안내 절차

통장이 만기가 되었어요!

01 해지신청서류·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하기
- 사유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하세요.
-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변경하세요.

02 해지완료 알림 대기(수일 소요)
- 접수된 서류확인 및 시스템상 해지승인 필요

03 해지완료문자 확인하기
- 정부지원금은 입출금 계좌에서 즉시 인출 가능
- 적금통장은 하나은행 또는 인터넷·스마트폰뱅킹(어플)에서 해지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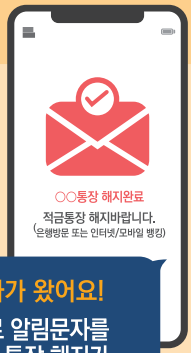

해지완료문자가 왔어요!
주의! 해지완료 알림문자를 받은 경우에만 통장 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장별 세부사항

1) (중도)지급해지 충족 요건

① 만기내 탈수급(생계,의료 모두 중지)시 적립금 전액지급
- 만기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지급

② 3개월 평균 소득이 소득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
- 초과 시점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단, 민간매칭금도 초과된 시점 전월까지만 지급

③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용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1회 한정) 또는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 중 선택하여 결정

④ 일부지급해지의 경우 만기시점에도 탈수급 미충족시 근로소득장려금의 5%만 지급함.
- 만기 후 탈수급 유예기간 3개월 기간을 적용받았음에도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도 일부지급해지 가능

2) 정부지원금 유의사항

① 소득미확인, 전산오류, 단순착오 등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이 미적립된 월이 있을 경우, '해지후정산' 절차로 미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명의 입출금계좌로 따로 지급함.

② 민간매칭금의 지급금액, 환수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3) 지급해지 신청 유예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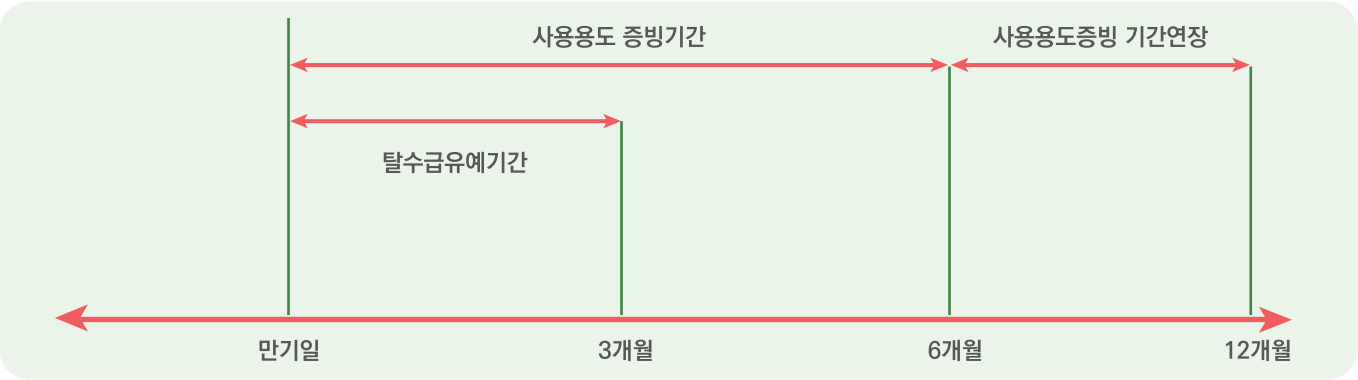

※ 해지후정산

① 지자체의 예탁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해지후정산 가능함.

② 당해년도 예탁금 부족시 차기년도 예산으로 해지후정산 가능함.
(ex, 가입자가 24년 5월~7월 근로소득장려금을 못받은 경우, 해지후정산 하려 했으나 24년도 예탁금 잔액이 없는 경우, 25년도에 예탁한 금액으로 추후 해지후정산 가능)

③ 해지후정산 절차

지자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해지후정산 처리 이전은 공통사항 부분의 지급해지 절차와 동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해지후정산 요청 공문 발송	가입자 입출금 계좌로 지원금 입금완료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후정산 처리전까지 입출금계좌를 해약하지 않도록 안내
*가입자의 입출금계좌가 해약된 경우, 지자체는 가입자 명의로 된 다른 입출금계좌 사본 및 입출금계좌 변경요청 공문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발송.

1) (중도)지급해지 충족 요건

① 3년간 통장유지,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지급

②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 월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본인 사망 시(가입자 사망 전,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 가능)
-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③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사용용도증빙서류 제출은 (중도)지급 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됨
- 지자체(시,군,구)는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를 독려하고, 미제출 시 해지 결정 처리

2) 사례관리 및 교육이수

① 기준 및 입력사항

- 3년 동안 반드시 사례관리 총 6회(연 2회), 자립역량교육 총 4회 필수
-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완료 후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정보시스템에 필수로 입력하여야함.
- 통장가입기간(3년)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교육이수가 가능하나 중도지급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기간별 이수 기준을 지급조건으로 적용

② 사례관리

- 만기지급해지 기준 총 6회를 이수하여야함.
  (중도지급해지는 사례관리 누적 횟수 예시 기준 참고)
- 지역자활센터에서 초기상담, 중간점검지, 본인적금 납입독려 및 미납관리, 지침 변동사항 등 가입유지관리를 위한 상담, 재무설계, 채무조정 등 가입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완료하고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을 경우 횟수로 인정함.

<참고> 사례관리 누적 횟수 예시 기준

최소 이수기준	가입 후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 1년 이내	1년 이상 ~ 1년 6개월 이내	1년6개월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 2년 6개월 이내	2년 6개월 이상
희망키움 II	총 1회	총 2회	총 3회	총 4회	총 5회	총 6회

③ 자립역량교육

- 지급해지 기준 총 4회 교육 중 집합교육 2회는 필수로 이수하여야함.
  (중도지급해지는 자립역량교육 누적 횟수 예시 참고)
- 동영상 교육은 2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1회로 인정 또는 교육시스템에서 발부되는 수료증에서 인정하는 횟수(시간)로 계산

<참고> 자립역량교육 누적 횟수 예시 기준

최소 이수기준	가입 후 9개월 이내	9개월 이상 ~ 1년 6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상 ~ 2년 3개월 이내	2년 3개월 이상	비고
희망키움Ⅱ	총 1회	총 2회	총 3회	총 4회	집합교육 총 2회 필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동영상 교육(LMS) 수강 방법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회원 MY서비스>교육관리>필수교육
비회원 알림소식>자료실>교육시청 후 수강확인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지역자활센터에 감상문 제출 시 과정당 교육 1회 인정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https://lms.welfareinfo.or.kr/
회원 수강신청>교육대상자>자산형성지원사업

집합교육 인정 사례

노후준비 상담서비스(국민연금공단)
-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노후준비상담을 받은 후 상담서비스 제공확인서를 제출받아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입력한 경우 집합교육으로 인정함
-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상담은 '전문상담'과 '종합재무설계' 중 선택 가능함
  *희망키움Ⅱ : 상담 1회 당 집합교육 1회 인정

3) 2024년 만기 해당월

구분	기수별 만기 해당월			
기수 가입월	2021-1(4월)기수	2021-2(7월)기수	2021-3(10월)기수	2021-4(12월)기수
만기월	2024년 4월	2024년 7월	2024년 10월	2024년 12월
유예기간종료	2024년10월	2025년1월	2025년4월	2025년6월

*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1) (중도)지급해지 충족 요건

① 기본요건

▲ 자활근로 종결 ▲ 교육 이수 ▲ 사례관리 상담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② 필수사항(택1)

㈀ 생계 · 의료급여 탈수급

㈁ 일반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활기업 취 · 창업 (*3개월 평균 최저임금 이상 발생)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및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 등으로 확인되는 자격증만 인정 가능)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상세사항은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지침 참조

③ 일부지급해지 요건

㈀ 기본요건 동일

㈁ 해당사항(택1)

- 만기 후 유예기간 도래 시까지 지급해지 필수사항 미충족
- (근로능력 상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활근로 종결
- (연령초과) 가입 중 만 65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연령 초과하였으나 자활근로 참여 지속할 경우 통장 유지 가능

2) 사례관리 및 교육이수

① 기준 및 입력사항

- 3년 동안 반드시 사례관리 총 6회(연 2회), 자립역량교육 총 4회 필수
-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완료 후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정보시스템에 필수로 입력하여야함.

② 사례관리

- 초기상담, 중간점검지, 본인적금 납입독려 및 미납관리, 지침 변동사항 등의 가입유지관리를 위한 상담, 재무설계, 채무조정 등 가입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완료하고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을 경우 횟수로 인정함.

<참고> 사례관리 누적횟수 예시 기준

최소 이수기준	가입 후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 1년 이내	1년 이상 ~ 1년 6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2년 6개월 이내	2년 6개월 이상
내일키움	총 1회	총 2회	총 3회	총 4회	총 5회	총 6회

③ 자립역량교육

총 4회의 교육 중 2회는 집합교육 이수 필수

<참고> 자립역량교육 누적횟수 예시 기준

최소 이수기준	가입 후 9개월 이내	9개월 이상 ~ 1년 6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상 ~ 2년 3개월 이내	2년 3개월 이상	비고
내일키움	총 1회	총 2회	총 3회	총 4회	집합교육 총 2회 필수

* 교육은 2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1회로 인정(또는 교육시스템에서 발부되는 수료증에서 인정하는 횟수(시간))
** 단, LMS(https://lms.welfareinfo.or.kr/)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강의 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도 1회 인정 가능)

※ 집합교육 인정사례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노후준비상담을 받은 후 상담서비스 제공확인서를 제출받아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입력한 경우 집합교육으로 인정(상담 1회 당 집합교육 1회 인정)

3) 지급해지 또는 일부지급해지 후 자활근로 재진입 시 지원금 반납 의무

① 대상 지원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② 반납기준 :
가. 3개월 내 재진입 시 지원금 전액 반납
나. 3개월 초과 6개월 내 재진입 시 지원금의 50% 반납

4) 내일키움수익금 관리

① 지급해지/일부지급해지 – 분기별 정산 시 적립한 수익금 전액 지급(이자 포함)
(*통장 해지 후 이체 필요 시 참여자 입출금 계좌로 직접 이체)
② 환수해지 – 내일키움수익금 관리계좌로 환수된 내역을 분기정산 보고한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적립비율 및 이자 처리 방법은「자활사업안내 I」참조)

5) 지급해지 신청 유예기간

※ 해지후정산

① 지자체의 예탁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해지후정산 가능함.
② 당해년도 예탁금 부족시 차기년도 예산으로 해지후정산 가능함.
(ex, 가입자가 24년 5월~7월 근로소득장려금을 못받은 경우, 해지후정산 하려 했으나 24년도 예탁금 잔액이 없는 경우, 25년도에 예탁한 금액으로 추후 해지후정산 가능)
③ 해지후정산 절차

지자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해지후정산 처리 이전은 공통사항 부분의 지급해지 절차와 동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해지후정산 요청 공문 발송	가입자 입출금 계좌로 지원금 입금완료

1) (중도)지급해지 충족 요건

① 기본요건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ㄱ) 지급해지 : 근로활동 유지 + 생계급여 탈수급(만기 전 탈수급 상태 3개월 유지)

– 근로사업활동 지속 :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근로사업소득 제외 예시)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ㄴ) 만기 전 지급해지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지원금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용도 증빙 같은 경우 받은 지원금 전체에서 50% 사용용도 증빙 필요!

② 일부지급해지 :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만기성공금) 전액

– (일부지급해지 요건)

(ㄱ)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ㄴ) 만기 후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을 못한 경우

(ㄷ)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2) 환수해지 기준 (* 상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구분 없음)

① 지급요건 미 충족 시(탈수급)

② 적립기간 중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하지 않고 근로활동을 연속 6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③ 사용용도 미 증빙한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및 근로소득공제금 미지급

3) 지급해지 신청 유예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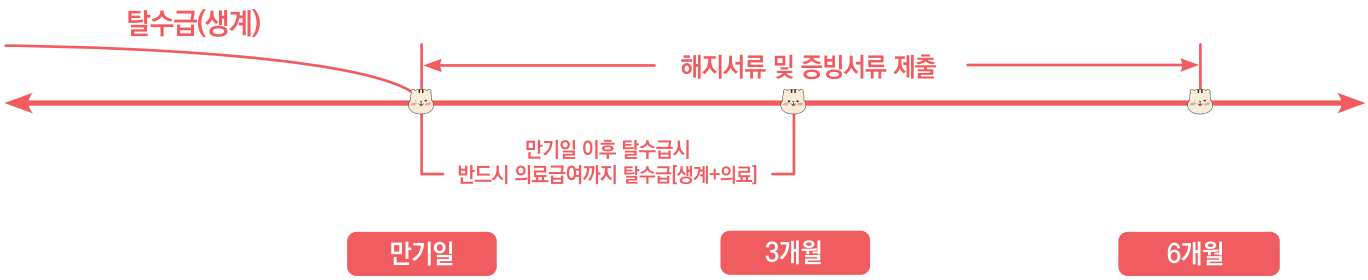

※ 해지후정산

① 지자체의 예탁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해지후정산 가능함.

② 당해년도 예탁금 부족시 차기년도 예산으로 해지후정산 가능함.

(ex, 가입자가 24년 5월~7월 근로소득장려금을 못받은 경우, 해지후정산 하려 했으나 24년도 예탁금 잔액이 없는 경우, 25년도에 예탁한 금액으로 추후 해지후정산 가능)

③ 해지후정산 절차

지자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해지후정산 처리 이전은 공통사항 부분의 지급해지 절차와 동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해지후정산 요청 공문 발송	가입자 입출금 계좌로 지원금 입금완료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후정산 처리전까지 입출금계좌를 해약하지 않도록 안내

*가입자의 입출금계좌가 해약된 경우, 지자체는 가입자 명의로 된 다른 입출금계좌 사본 및 입출금계좌 변경요청 공문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발송.

1) (중도)지급해지 충족 요건

① 기본요건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등 참고

– 큐넷에 확인되지 않는 자격(자격증 등)은 해당 자격과 관련된 개별 법령을 확인 후 진행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 온라인교육으로 3회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

*지급해지 대상자(중도지급해지 포함)에게 교육이수/국가공인자격증 취득/사용용도 증빙 관련 안내 진행

② 중도지급해지

· **청년 본인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한 경우(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2) 교육이수

– 기준 : 3년 동안 총3회 교육 이수(연1회/총3회), 교육 2시간 이상 이수시 1회로 인정

<참고> 자립역량교육 누적횟수 예시 기준

최소 이수기준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비고
청년저축	총 1회	총 2회	총 3회	온라인 3회 이수 가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동영상 교육(LMS) 수강 방법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회원 MY서비스>교육관리>필수교육

비회원 알림소식>자료실>교육시청 후 수강확인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지역자활센터에 감상문 제출 시 과정당 교육 1회 인정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https://lms.welfareinfo.or.kr/

회원 수강신청>교육대상자>자산형성지원사업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설계 상담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설계 상담 서비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경우에만,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재무설계 상담 서비스 1회 이수시 집합교육 1회 인정, 2회 이수 시 집합교육 3회 이수 인정

3) 2024년 만기 해당월

구분	기수별 만기 해당월			
기수 가입월	2021-1(4월)기수	2021-2(7월)기수	2021-3(10월)기수	2021-4(12월)기수
만기월	2024년 4월	2024년 7월	2024년 10월	2024년 12월
유예기간 종료	2024년10월	2025년1월	2025년4월	2025년6월

*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부록

자산형성지원사업 증빙서류 관련 기준 및 예시

부록 : 자산형성지원사업 증빙서류 관련 기준 및 예시

인정 범위	통장 유지 기간 중 동일가구에 속한 이력이 있는 가구원이 사용한 내역 (※동일가구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따름)	
구분	**용도**	**증빙서류 예시**
주택구입 및 임대	1.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계약금 2. 주택 대출금 및 이자 상환비 3. 주택 유지 및 보수비용	① 기본 : 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 예외 적용 예시 - LH에서 발행한 경우 월 임대료 : 대금납부확인원 보증금 : 계약사실확인원 - 경매로 구입한 경우 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낙찰 확인서), 이체확인증 ② 주택 대출금 및 이사 상환 내역 ③ 주택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 불인정예시 : · 주택담보대출 · 일반가계대출 · 공과금 및 관리비 · 이사 비용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1.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관련 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대학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특수학교)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2.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3.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 4.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교복구입비용 5.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가입 이후 상환한 금액만 인정) 6. 대입 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7. 방과후 수업비, 수학여행비, 우유급식비, 실습비용 등	·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지로납부 영수증, 이체확인증, 교육기관 사업자 번호 표기 및 직인이 찍힌 영수증 등 (택1) ※ 불인정예시 : · 개인 과외(사업자등록증(개인과외 등록증) 제출 시 인정) · 사설학원 간이영수증 · 어학연수비용(수업료 인정) · 워킹홀리데이 비용(비자 발급, 항공료 등) · 기숙사비(주거비만 인정, 식비 및 운영비 항목 제외)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1.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등 물품 구입(소모성 자원도 인정) 2. 자동차* 구입 등 *(자동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 1톤 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 택배용 소형차량 등) 3. 농업·어업·축산업 관련 농지, 농기계, 농기구 등 농어업에직접 사용되는 비용	· 기본 :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 예외 적용 예시 · 농·어업·축산업 관련 (택1) ①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업인 확인서 ③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발급/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 해양 수산청 발급)

구분	용도	증빙서류 예시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 자활기업 공동 창업시: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은 없으나 자활기업인 신청시 제출한 구성원 명단으로 갈음 가능.	· 선택 ① 사무실 임대료: (ㄱ) 임대차계약서 (ㄴ) 이체확인증 ② 사무기기 등 물품구입: (ㄱ) 구입물품내역 (ㄴ)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제출 시 견적서 첨부) ③ 영업용 차량 구입비(할부금 가능): (ㄱ) 사업자 등록증 (ㄴ) 영업용 차량 등록증 (ㄷ) 자동차 계약서 (ㄹ) 이체 확인증 **※ 불인정예시 :** **· 자활기업 창업자금 및 수익잉여금, 자활기금 등 지원금으로 구매한 내역**
그 밖의 자활 · 자립	1. 의료비 관련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약국 등 2.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ISA계좌 상품가입, 일반금융기관의 적금상품(청약상품 가능) 3.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납입(통장가입 기간동안 납입액 인정) 4.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통장가입 기간동안 납입액 인정) 5. 결혼자금(결혼식 관련 행사비용 인정) 6. 장례비용 7.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본인부담금 한해 인정) 8. 요양원,재가요양(요양급여 제외한 자부담금), 장애인 전동 휠체어 등 용구 구매 9. 어린이집 보육료(부모부담금)	· 선택 ① 병·의원 진료·수술비 등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수증 ② 증빙금액만큼의잔고내역이확인되는 은행 확인증(계좌 사본 등) ③ 청첩장(행사확인용/혼인신고서 대체 가능)+계약서 혹은 영수증 **※ 불인정예시 :** **· 미용 목적 의료비** **· 결혼 자금 중 혼수 및 예단비** **· 예방접종, 건강검진, 채용 신체검사 비용** **· 간병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 직군 연금 납입분**

이행계획서 제출 시 ISA 가입 관련 업무 처리 지침 안내

①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 (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사본 등) 제출 필수)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시 지자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송부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안내)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7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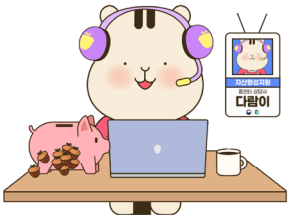

문의처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본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